



보도 시점 2024. 2. 19.(월) 12:00 배포 2024. 2. 19.(월) 10:00

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,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

-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, 벤처기업 확인 목적,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신청은 우선심사
-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, 가산세 면제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'20년부터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지난해에는 총 2,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'20년 1,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% 증가하였으며,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-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'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', '신성장·원천기술'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,
- 법인세(소득세)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사전심사는 홈택스, 지방국세청(법인세과)·세무서(민원실)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, 이번 법인세(소득세)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.
-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(소득세)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,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합니다.
-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 게시된 '사전심사 가이드라인'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*(2. 23.)를 참고하시고,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.

* 온라인설명회 참가신청 페이지 링크 : <https://taxstudy.nts.go.kr/fmt/H100021/taxEduc/renew/list.do>

1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

- (신청인) 사전심사는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 법인과 거주자(개인사업자)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(신청기한) 이번 법인세(소득세)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,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 다만, 신고 기한에 임박한 신청의 경우 결과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신고 이후라도,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(신청방법) 홈택스(www.hometax.go.kr)*, 우편, 방문접수(세무서 민원봉사실, 지방청 법인세과)를 통해 신청(재신청) 할 수 있습니다.
 - * 홈택스 로그인 >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소득·법인세 관련 신청·신고 >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
 -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¹심사 진행상황 확인, ²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제공, ³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이 있습니다.

| 홈택스 신청화면 :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세무대리인 지정 |

④ 심사결과 통보받을 세무대리인

사업자등록번호	<input type="text"/>	확인	상호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

※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 외에 심사결과를 통보받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- (제출서류) 「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」, 「연구개발비 명세서」, 「연구개발 보고서」,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「연구노트」, 「급여대장」, 「재료비 집행내역」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 시 제출서류뿐만 아니라 보완서류도 홈택스로 제출 가능하며, 연구소 인정서, 지식 재산권 등록자료 등 국세청이 자체 수집 가능한 자료는 신청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2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

- (심사 내용) 국세청은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세법상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비용 적정성, 두 가지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.

1 연구개발활동 심사

- 신청인이 수행한 **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*에 해당하는지 여부를** 판단합니다.

*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

- 전문성이 필요한 **연구개발활동 심사**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**9개 분야별* 전문심사관****이 검토를 전담하고 있습니다.

* (9개 분야) 기계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소프트웨어, 화학, 에너지시스템, 토목·건축, 디자인, 바이오

** 다년간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담팀 구성

2 비용 심사

- 신청인이 **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** 확인하며,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**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**합니다.

- (신청 대상)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, **연구개발활동 여부 심사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** 가능합니다.

- 다만,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**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**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- (서면심사 원칙)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**비대면 서면심사**를 원칙으로 합니다.

- 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**보완을**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하에 **현장 확인**을 할 수 있습니다.

- 제출하신 모든 문서는 **암호화**하고 열람 권한을 심사 담당자로 제한하는 등 철저히 **관리***하고 있으므로, **정보보안에** 대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* 서류제출 시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, 구체적 수치 등은 가리거나 제거 후 제출 가능

- (결과 통지) 결과통지 전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심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완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- 또한,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, 신속·편리하게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(소득세) 신고에 반영 가능합니다.

3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

-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(소득세)를 신고할 경우, 아래와 같은 효력*이 부여됩니다.
 - * 단,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, 사실관계의 변경·누락 및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
 - ① 심사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
 - ② 사전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,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
- 또한, 전담팀이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컨설팅으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구비를 도와드리고,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완사항 등을 알려드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4 금년도 개선사항

- (우선처리 확대*) 지난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게 제공하던 ‘사전심사 우선처리’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‘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’ 및 ‘신성장·원천기술’ 관련 심사신청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.

■ 혁신성장유형 :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로,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‘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% (재확인 시 10%)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연구개발비 증빙으로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제출가능

* ‘사전심사 우선처리 확대’는 경제활력 제고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「국세행정 역량강화 TF」의 민생경제지원 분과 과제 중 하나입니다.

-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1)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2)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해드리며, 3)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- (중간통지 의무화)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, 처리 지연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해 드립니다.
 - (온라인설명회 확대) 작년부터 기업의 실무자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사전심사제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,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*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* ('23년) 2회 실시 → ('24년) 2. 23.(금)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 예정

「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」 온라인 설명회가 2. 23.(금)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
 ◆ 설명회 참가신청 페이지 : <https://taxstudy.nts.go.kr/frnt/H100021/taxEduc/renew/list.do>

5 향후 추진계획

-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-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사전심사 제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」과 심사사례를 보완하여 국세청 누리집, 홈택스에 게시하는 등 도움자료를 개선하는 한편,
-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, 납세자 대상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(지원4팀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☎ 044-204-3923~33

담당 부서	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	책임자	과 장	안민규 (044-204-39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영 (044-204-3922)

사례 ① 인정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



□ 사실관계

- A기업은 **차별화된 유효성분**을 함유한 **기능성 제품**을 연구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○억원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
 → **(쟁점)**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**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**를 사용하고 **시험 등 평가를** 진행한 경우 **연구개발 활동에** 해당하는지 여부

□ 심사결과

-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여 **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**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과정의 **체계성** 및 **재현 가능성**이 확인되어, **세법상 연구개발 활동**으로 적격 판정

사례 ② 인정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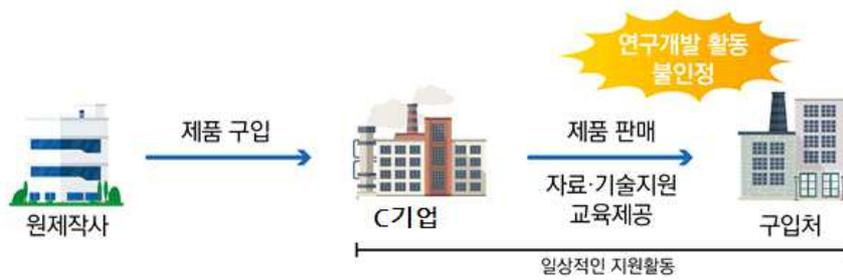
□ 사실관계

- B기업은 **제조원가 절감**을 위해 **기존의 공정을 단축**시키는 **통합공정 과제**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
 → **(쟁점)** 기존 **생산공정**을 단축하기 위해 **새로운 통합공정**을 개발하는 활동이 **연구개발 활동에** 해당하는지 여부

□ 심사결과

- 기존의 **생산공정**을 **통합공정**으로 변경하고 **신규 공정**에 적합하도록 **기존 제품의 설계 변경, 완성도를 검증**하는 체계적인 활동은 **세법상 연구개발 활동**에 해당하여 적격 판정

사례 ③ 불인정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



□ 사실관계

- C기업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고객사에 대하여 자료 및 기술지원과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, 이러한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심사 신청
 → (쟁점)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

□ 심사결과

- 고객사에게 제품에 대한 자료·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활동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

사례 ④ 불인정 공개된 문헌을 단순 복제한 연구개발 활동



□ 사실관계

- D기업은 자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○억원에 대해 심사 신청하고 관련 증빙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
 → (쟁점) 공개된 문헌을 단순 인용 혹은 복제하여 수행한 자체 연구개발활동의 적정 여부

□ 심사결과

- 국세청 전담팀은 D기업의 연구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 갑법인의 연구보고서, 특허명세서 등의 내용을 단순 복제*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, 신규성 및 독창성 부재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
 *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연구 결과를 단순 인용 혹은 복제하는 것도 부적격 대상임